

##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제3차 벤쿠버 중앙이사회 참가보고서

APEC 등록 건축사 제도의 제3차 중앙이사회가 캐나다의 벤쿠버에서 지난 8월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이 중앙이사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APEC 주요국에서 건축사제도를 관장하거나 관리하는 단체나 등록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국의 건축사제도 등을 관찰하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협회의 'APEC 등록 건축사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의 시 좋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의 등록건축사들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 대표단은 본협회 이사인 심재호 이사와 APEC 한국위원회 위원인 이근창 아카시아 회장과 박연심 전 여성건축사회 회장, 그리고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준규 국제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중앙이사회에서의 주요의제는 현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 APEC 등록건축사 제도안에서의 상호인증의 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회원국들이 중앙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에 대해 수행하지 못할 경우의 제재방법, 그리고 돌아가며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사무국 경비에 대한 분담 등에 대한 안건들이 주요 의제였다.



중앙이사회 회의

이번 제3회 중앙이사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참가국 및 참가자: 14개국 총 53명

의장국	캐나다	등록원장, 협회장 등	7명
사무국	멕시코		8명
	호주	등록원장 등	3명
	홍콩	위원회	3명
	일본	주택국(MLITT) 등	4명
	말레이시아		3명
	뉴질랜드	건축사등록원	2명
	중국	건축사등록원	3명
	한국	협회	4명
	필리핀	협회장	4명
	싱가포르	등록관	2명
	태국	등록원	3명
	미국	등록원, 협회장 등	7명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결사항들

가. 등록신청서의 표준화 양식 사용에 대한 건 : 추후 MRA에서 각 국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질 등록신청서 표준양식이 사무국에 의해 제안됨 : 일본의 반대로 앞으로 더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로 함

나. 제재에 관한 지침결정: 중앙이사회의 운영 메뉴얼이나 또는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단계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회원국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 등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함. 실무위원회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 들어가기로 함

다. 각 회원국 위원회의 경과보고 규정: 기존의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라. 상호인증에 대한 사례

- 1)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1994년부터 협상해옴. 캐나다와 미국은 문제가 없으나 멕시코의 경우는 교육부터 실무까지 제도적으로 차이가 많아 문제점이 노출 됨.
- 2) ASEAN 10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보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협정은 조인이 된 상태이며 2009년까지 실무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이나 기본안은 지역건축사와 협업하는 것임.
- 3) 홍콩 vs. 중국: 지난해까지 400명의 건축사 자격증을 상호 교환
- 4) 호주 vs. 일본: 2008년 7월에 APEC framework내에서 협정 호주는 면접, 일본은 영어 에세이를 통과하면 면허를 줌
- 5) 호주 vs. 대만: 2007년 9월 협정 조인함
- 6) ACE vs. AIA: 10여년정도 협상을 해옴, 2009년에 NCARB 가 주도 타결을 하려고 함
- 7) ACE vs. 캐나다: 진행 중임.
- 8) 호주 vs. 홍콩: 2007년 협정
- 9) ACE vs. 멕시코: 2002년 협정되었다 함.

마. APEC 건축사제도의 상호인증의 Framework

제2회 멕시코 중앙이사회에서 3가지로 요약이 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단계별로 6단계로 만들. 이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현황이 대부분 지역건축사와의 협업으로 되어있음을 이해시키고 설득한 결과로 상호인증의 단계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를 얻어 가능해졌다. 이 기본의 framework안에서 점차적으로 조건이 없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이사회 대표단 기념촬영

• 제2회 멕시코 중앙이사회 결정사항: 3단계

- Domain Specific Assessment
- Comprehensive Registration Examination
- Host Economy/Residence/Experience

• 제3회 중앙이사회 결정사항: 6단계

- no Restriction: 호주/뉴질랜드, 미국/캐나다
- Domain Specific Assessment: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호주, 대만
- Comprehensive Registration Examination
- Host Economy/Residence/Experience
- Local collaboration: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 중국, 캐나다
- no Recognition(of APEC Architects)
- ※ 태국은 제도적으로 제안이 불가함
- ※ 언어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됨. 즉 면접이나 간단한 시험 등은 host economy 의 언어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둠.

바. 사무국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 협의에 거쳐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되 미국이 제안한 세계은행의 지표에 건축사 수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분담하기로 함. 분담금은 멕시코에서 지난 2년 동안 사무국 수행하며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고 이 비용의 75% 레벨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의결함. 1년에 U\$36,000로 2년 경비는 U\$72,000 이 됨.

예) 미국, 일본: U\$ 5,190/year, 한국, 캐나다: U\$ 4,330/year, 중국, 호주, 홍콩: U\$ 3,464/year, 태국, 말레이시아: U\$ 1,732/year

※ 실무 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결하고 협의된 방법에 의해 의결이 됨. 의결된 방법에 의해 분담비용을 사무국에서 다시 재정리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의결함.

사. 차기 사무국의 결정: 지난 중앙이사회에서 결정된 로테이션에 의하면 미국이 차기 사무국이나 내부 사정상 연기를 요청함. 따라서 2009년부터 2년간의 term을 필리핀에서 맡기로 함

야. 중앙이사회 개최국: 2010년 제4회 중앙이사회를 필리핀에서 추가 등록 비용없이 개최하기로 함. 2012년은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함.

**앞으로의 전망과 문제점**

APEC 건축사제도는 이번 밴쿠버의 제3회 중앙이사회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의 중 사무국에 대한 지정, 분담금 배정방법 및 제재조치 등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잘 넘김으로써 앞으로도 어느 기간은 무사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발견한 몇 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APEC 건축사제도든 아니던 서로 필요한 베이스 (reciprocity: 상호호혜)에서 여러 다른 레벨에서 상호인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 호주가 가장 적극적이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여러 상호인증의 고리에서 낙오가 될 수 있고, 시장의 경쟁력이나 시장 진입의 필요성에서 낙오된다면 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APEC의 바운더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이 건축사 면허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나 등록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아카시아 회원국과의 간담회

이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나라가 등록관등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석하여 결정적인 의견을 내는 반면, 우리는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전부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APEC 건축사 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APEC 건축사제도의 Framework 내에서 상호인증의 틀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쉽다.

APEC 건축사 제도에서의 적극성이 미국 등의 국가와의 FTA 등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관련된 부처들과의 공조에 의한 제도적인 체제구축과 정부기구가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미국의 NCARB와 같이 정부를 대신하여 협의를 주도할 수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비영리 기구의 존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간사  
신춘규 건축사